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손윤목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계획안은 2016년 4월 1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정이유

-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충청북도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 보장과 자립 지원근거 마련을 통한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안 제7조)
- 청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안 제10조)
-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 및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안 제16조)
- 청년희망센터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4. 검토의견

- 이번 조례는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충청북도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 보장과 자립 지원근거 마련을 통한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구성을 보면 총 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안 제7조)과 청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안 제10조),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 및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안 제16조), 청년 희망센터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법령 및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현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외에 청년 관련 법령은 없으며, 타 시도의 조례 제정 현황은 서울특별시¹⁾ 등 6개 광역시도에서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시행 중에 있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은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조례안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였는데 최근 고학력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고,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평균 취업연령도 상승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적절하다고 사료됨.

1)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 다만 안 제17조 청년희망센터 구성과 운영 및 같은 조 제2항 3호에 있는 청년광장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붙임 : 충청북도 청년 기본조례안 1부. 끝.